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11월 13일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최**	최** 1979-12-22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7길	거주불명등록 2019-11-13
정**	정** 1967-06-17	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5길	거주불명등록 2019-11-13